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1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55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9. 2.
판 결 선 고	2016. 9. 2.

주 문

1.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1

가. 원고는 B종교단체 중앙총부 산하 C교구 대표이다.

나. B종교단체 C교구는 재단법인 D 소유의 [redacted]구 E 지상 2층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와 건물은 2010. 8. 13.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장은 2013. 4. 원고에게 B종교단체 C교구의 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구역 내 [redacted]구 G 종교부지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4. 8. 20. 원고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는데, 위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18,961,790원, 지방교육세 1,083,530원, 농어촌특별세 1,354,410원 합계 21,399,730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

바.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19,251,900원, 지방교육세 1,100,100원, 농어촌특별세 1,375,130원 합계 21,727,13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5.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 도중인 2015.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재단법인 D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1

같은 날 위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은 원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2015. 12.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아닌 재단법인 D(B종교단체 C교구)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9. 29. 재단법인 D 이사장 H으로부터 'B종교단체 C교구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의 C교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협상 및 교구 재건축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임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1

2) 이 사건 토지사용 승낙서에는 **"이 사건 조합은 상기의 위치 및 면적(이 사건 토지)에 B종교단체 C교구의 재건축을 위하여 B종교단체 C교구 교구장 A[1]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는 건축주를 **"B종교단체 C교구 대표 A"**로, 주용도를 **"종교시설"**, 건축물명을 **"B종교단체 C교구"**로 하고 있다.

4) 원고가 2013. 12. 27.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건축물설계표준계약서에는 공사명 **"답십리 B종교단체 C교구 신축공사"**, 건축주 **"B종교단체 C교구장 A"**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 체결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소방공사감리 용역계약서에는 발주자 내지 건축주가 **"A"**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건축주를 **"A"**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2014. 8. 20.자 사용승인 통지에는 위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교회)"**로 하고 있다.

6)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상호(법인명)란에 **"B종교단체 C교구"**, 성명란에 **"A"**,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 C구 E"**가 기재되어 있고, 입금영수증에는 **"B종교단체 C교구"**가 위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원고는 2015. 5. 2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을 'B종교단체 C교구 대표 A'에서 '재단법인 D'으로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7.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재단법인 D이므로 건축물대장 소유자현황을 재단법인 D으로 경정하라는 취지의

1) 이하 서증의 문구를 인용할 경우 원고를 'A'로 기재하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1

재결을 하였다.

8)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재단법인 D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 10, 1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서 위 취득에는 건축법 제2조 1항 제8호에 따른 건축과 같은 원시취득도 포함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재단법인 D 소유의 종전 토지와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B종교단체 C교구의 재건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종교시설 용도로 건축되어 건축허가서상 건축물명도 'B종교단체 C교구'이고 현재 B종교단체 C교구의 교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관련 각종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이 B종교단체 C교구의 대표자라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에도 건축주가 "B종교단체 C교구 대표 A"로 되어 있는 점, ④ 재단법인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건축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한 점, ⑤ 원고가 B종교단체 C교구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려 했다면 각종 공사대금 입금영수증의 입금자 명의나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취인 명의를 'B종교단체 C교구'로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1

물의 신축자금은 원고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교인들의 성금 또는 재단법인 D의 자금인 것으로 보이고,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는 점(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참조), ⑥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장부로서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생성되는 것에 불과하므로(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아닌 재단법인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1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1

목 록

[redacted]구 G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종교시설

지하2층 162.87㎡

지하1층 59.32㎡

지하1층 주차장 11.83㎡

1층 106.24㎡

2층 106.24㎡

3층 106.24㎡

4층 107.38㎡

옥탑 1층 13.16㎡. 끝.